

原子力保險의 種類, 目的 및 補償範圍

— 大韓損害保險協會 原子力保險 폴 —

原子力施設이란 原子核分裂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熱을 이용하는 原子力發電所를 비롯하여 그에 수반되는 核燃料濃縮工場, 核燃料加工工場, 使用後核燃料 再處理工場 등을 포함한다. 保險과 관련해서는 이들 시설물들도 통상 다른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突然한 事故에 對備하여 保險에 付保하나 原子力이란 特殊性을 감안하여 현재 世界的으로 原子力保險“폴”(pool)에 付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特性을 가지고 있다.

1. 原子力保險의 特性

原子力保險은 ① 世界的 原子力施設數가 아직도 大數法則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고, ② 거대한 保險加入金額에 따른 民營保險業者의 直營이 어려울 뿐 아니라, ③ 사고자체의 巨大性, 後發性, ④ 再保險의 원활화 등의 國際性 및 ⑤ 保險引受技術의 專門性 등을 이유로 原子力保險의 營爲는 세계 각국에서 共同引受(Pooling System)로 운영하고 있다.

2. 原子力保險의 沿革

第2次 世界大戰中인 1942年 美國 Chicago 大學에서 原子爐의 運轉이 開始되자 1947년에는 처음으로 美國에서 原子力責任保險(이때는 法律上의 賠償責任이 아님)이 導入되었다. 그후 1954

년 “原子力損害賠償에 관한 法律” Price-Anderson Act(Indemnification and Limitation of Liability Provisions of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이 制定되었다.

1956년 10월 Italy Rome에서는 保險監督機關 第3次會議에서 “原子力危險과 保險保護”라는 主題로 原子力으로 인한 損害補償方法에 대하여 討議가 있었다.

原子力保險에 관한 하나의 轉機는 1957년2월에 英國에서 개최된 Conference of Representatives of the British Insurance(Atomic Energy) Committee and of Continental and U.K. Professional Reinsurance Companies를 들 수 있다. 이때의 主題는 “原子力保險에 관한 共同利益 增進方案”이 討議되었다. 이 회의는 현재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hairman Nuclear Risks Pool(通常 London Conference라고 부름)로서 2년에 한번씩 英國에서 개최되며 지난 '83년 10월에는 第13次 會議가 열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初半에 들어와 原子力被害者에 대한 完全補償과 國際間的 紛糾를 사전 해결하고 신속한 보상을 기한다는 이념하에 責任의 集中, 絕對的 責任(無過失責任主義), 國家補償, 損害補償을 위한 擔保措置 등 國際的인 統一性을 기하고자 國際條約(비엔나條約)을 締結하기에 이르

렸다.

日本에서도 1961년 6월에 “原子力損害賠償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原子力 관계 法律沿革을 보면, 1958년 3월 11일, 法律 第 483號로 原子力의 研究, 開發, 生産, 利用과 管理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原子力法」이 制定되었으며, 그 후 1969년 1월 24일, 法律 2094號로 「原子力損害賠償法」이 原子爐의 運轉 등으로 인하여 損害가 발생한 경우의 損害賠償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被害者를 보호하고 原子力産業의 健全한 발전에 기여코자 制定된 바 있다.

그 후 1982년 1월에 「原子力安全센터」가 發足, 原子力의 安全性 및 信賴性確保를 위한 技術, 行政, 管理를 담당케 되었다. 同센터는 國內 原子力施設物의 事故前 豫防과 事故後 對策을 주 과제로 하고 있으며, 原子力發電所施設의 敷地 選定에서부터 System 및 機資材設計, 建設稼動, 核燃料處理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原子力施設物의 安全性 審査 및 管理에 注力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原子力發電所의 着工 및 「原子力損害賠償法」의 制定·施行에 따라 民營保險會社에서는 原子力保險事業을 운영케 되었는데 이의 준비작업으로서 1969년 12월 「大韓損害保險協會」내에 「特種保險開發分科委員會」를 설치하여 同保險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졌었다.

同研究報告書 머릿말을 인용해 보면 “1969년 1월 24일자로 原子力損害賠償法이 分布됨에 따라 財務部 당국의 지시(保險 第1223-2242號 1969. 8. 28)에 의거, 上記 協會內에 同分科委員會를 구성”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原子力保險에 관한 綜合的인 보고서를 작성, 관계 당국에 제시하게 되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 原子力保險의 主要 沿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 12. 31 : 財務部長官으로부터 13개 損保社의 原子力保險 共同營業承認 許可取得(財務部 保險 1223-6)

◇1971. 7. 28 : 13개 損保社를 회원 회사로 하는 「韓國原子力保險 Pool」 發足

◇1972. 1. 4 : Sweden Pool로부터 原子力保險의 受再保險을 인수하여 처음으로 營業 개시

◇1974. 1. 1 : 「韓國原子力保險 Pool」 독립 운영(初代會長 : 前再保公社 李養浩 사장)

◇1974. 1. 15 : 美國 Pool(ANI, MAERP)과 再保險特約 체결

◇1975. 7. 31 : 韓國電力과 古里 原子力發電所 輸送賠償責任保險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로 原受保險業務 개시

◇1978. 3. 1 : 大韓損害協會 高濟勳 회장이 第2代 原子力保險Pool 會長으로 취임

◇1978. 3. 2 : 韓國保險公社가 會員會社로 추가(14개 회원사)

◇1980. 11. 1 : 「韓國原子力保險 Pool」이 「大韓損害保險協會」에 통합

◇1984. 4. 1 : 韓國保險公社 사업 정지로 탈퇴

3. 原子力保險의 種類

原子力保險의 종류는 原子力施設의 가동에 따른 核燃料物質의 運搬, 貯藏, 使用 또는 使用後의 處理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즉, 自己施設의 損害, 從事者 또는 第3者의 身體나 財産에 대한 放射能汚染 및 毒性的 物質에 대한 것인 바 이를 保險種類別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

- ① 組立保險(Erection All Risks Insurance)
- ② 財産保險(Material Damage Insurance)
- ③ 機械保險(Machinery Breakdown Insurance)
- ④ 利益喪失保險(Loss of Profit Insurance)
- ⑤ 輸送賠償責任保險(Transport Liability Insurance)
- ⑥ 賠償責任保險(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rance)

⑦ 雇傭主賠償責任保險(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그러나 우리나라에서營業하는 현재의 原子力保險은 財産保險, 輸送 및 第3者賠償責任保險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原子力財産保險(Nuclear Material Damage Insurance)

原子力財産保險은 原子力施設 즉, 原子力發電所, 核燃料濃縮工場, 核燃料加工工場, 使用後核燃料再處理工場, 研究所 및 學校 등의 原子力施設 및 裝置와 同施設內에 所在하는 財産에 原子力損害 및 火災, 曝發 등의 在來損害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① 保險의 目的

이 保險의 目的은 原子力事業者가 施設構內에 所有, 管理하는 物件 以外에 施設構內에 所在하는 建物, 原子爐(Reactor) 核燃料 및 機械, 設備 등 全物件이 그 대상이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되며, 付保時期는 核燃料의 施設構內 搬入時 또는 核燃料의 最初 裝填時부터이다. 특히, 이 보험은 原子力發電所의 경우 보험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3가지 zone으로 구분하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a. Hot zone(原子力 위험이 가장 큰 施設地域)

이에는 原子爐, 原子爐收容建物, 核燃料 其他 同시설내의 機械設備가 여기에 포함된다.

b. Warm zone(中間地域)

Hot zone과 Cold zone의 中間地域 즉 Auxiliary Building(Service Bldg.) 등이다.

c. Cold zone

이는 蒸氣Turbine이나 構內所在 周邊物件, 寄宿舍施設 등이 여기 포함된다.

② 補償하는 損害

火災, 曝發 등 在來危險(Conventional Risks)으로 인한 손해와 Energy의 過度한 增殖 또는

冷却系의 고장으로 인한 原子爐內의 과도한 온도 상승등의 사고로 原子爐 또는 核燃料物質로부터 放射能이 漏出됨으로써 생긴 손해, 곧 放射能汚染(Radio-active Contamination)으로 인하여 그 原子爐의 生物保護遮蔽 또는 一次冷却循環裝置(Primary Cooling Circuit)의 表面, 또는 이들의 外部에 있는 保險의 目的에 생긴 손해 즉, 原子力損害를 補償한다.

③ 特別約款

財産保險에서 添附되는 特約은 求償權不行使 特別約款(Special Conditions on Waiver of Rights of Recourse)외에 12가지가 있다.

(2)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Nuclear Energy Liability Insurance)

原子力 損害賠償責任保險은 法律上の 強制保險으로서 원자력 시설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第3者에게 原子力損害를 입혔을 때 「原子力損害賠償法」에 따라 同被害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原子力災害는 10년 20년 후에 그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한 後發性을 고려하여 이 보험은 補償責任期間을 1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① 保險의 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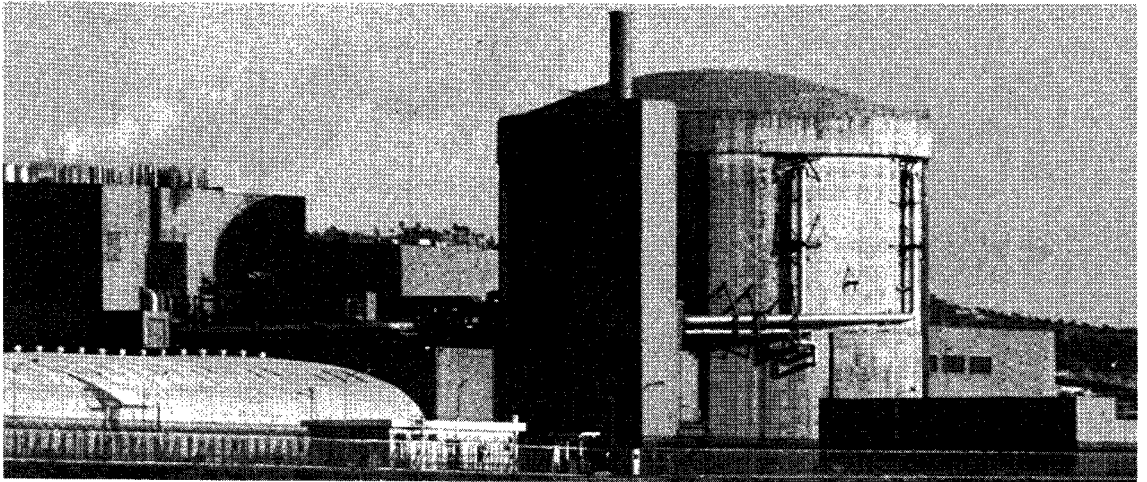
證卷에 기재된 施設內에서 생긴 사고로 인하여 他人의 身體에 傷害(死亡包含)를 입히거나 財物의 滅失, 毀損 또는 汚損으로 法律上の 賠償責任을 負擔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② 補償限度額

損害賠償額의 결정은 原子力損害賠償法 第6條에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 契約金額 및 原子力損害賠償 契約金額 또는 供託金額은 1공장 또는 1사업소마다(原子爐를 船舶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척마다) 각각 30억원을 한도로 大統領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③ 特別約款

特約은 風水災危險擔保特別約款(Flood and



Storm Coverage Endorsement) 외에 4가지 종류가 있다.

(3) 原子力 輸送賠償責任保險(Nuclear Transport Liability Insurance)

原子力 輸送賠償責任保險은 核燃料 등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 國際間에 수송되어질 경우 그 수송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賠償責任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경우 輸送路程이 第3國을 통과할 때나 國際公路上에서의 사고를 예상할 때, 이 보험은 어떤 다른 보험 종목보다도 國際性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므로 1國內의 法規보다는 이에 관한 國際條約(현재 “비엔나條約”)이 우선 적용되어지고 있다.

① 補償하는 損害

證卷에 明示된 核燃料物質(Nuclear Fuel Material) 등의 수송중에 當該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原子力事故로 인한 原子力損害에 대하여 被保險者가 法律上的 賠償責任(Legal Liability) 또는 證卷에 明示된 契約上的 賠償責任(Contractual Liability)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② 保險期間

保險期間은 保險의 目的이 출발지에서 輸送用具에 荷役終了된 시점에서부터 도착지의 最終貯藏所에 搬入될 때까지이다.

③ 特別約款

이 保險의 特別約款은 原子力 損害賠償責任不擔保區域特別約款(Nuclear Liability Excluding Zones Clause) 외에 4가지가 있다.

4. 原子力保險의 運營現況

原子力保險의 營業은 13개 회원사를 대리하여 大韓損害保險協會에서 原保險 및 受再保險을 原子力保險 共同引受協定書에 의거, 작성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共同引受種目 : 原子力 財産保險, 原子力 損害賠償責任保險, 原子力 輸送賠償責任保險

- 引受契約의 配分 : 原受保險은 均등 배분하고 外國受再保險은 各자의 保有限度額을 기초로 運營委員會가 조정하는 비율로 한다.

- 保險料精算 : 每分期別로 정산하여 受再保險料에 대하여는 受再保險料 전액을 預託管理한다.(共同引受時 各회원사는 連帶責任을 지지 아니하므로 그 대책으로 협회에서 預託管理하며 各국 “풀”도 같은 措置를 취하고 있음).

- 保險證卷 및 領受證 발행 : 共同引受證卷을 발행·교부하여 對外名稱을 韓國原子力保險“풀”로 한다.

- 會議運營 : 運營委員會 및 專門委員會를 둔다.

- 海外再保險 : “풀” 대 “풀”로 거래한다.